

「서울특별시마포구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3년 11월 27일

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상수

「서울특별시마포구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마포구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3년 11월 15일 (금)

나.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3. 행정건설위원회 회부일자

2013년 11월 19일 (화)

4. 관련근거

가. 「지방자치법」

나.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조례」

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징수 조례」

5. 개정이유

종이 수입증지가 전자이미지화한 수입증지로 대체되고, 수수료 납부 방법이 수입증지 외에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현 실정에 맞도록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6. 주요 개정내용

- 가. 수입증지와 수입증지요금계기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나. 수수료 납부 방법 변경 및 추가함(안 제3조).
- 다.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일부 내용을 조례에 편입함(안 제5조~제7조).
- 라. 증명발급기 출력 서식에 맞게 별지를 수정함(별지 제2호서식).
- 마. 종이 수입증지 폐지에 따라 수입증지 발행, 판매 및 교환 관련 규정을 삭제함(제8조~제12조).
- 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

7. 검토의견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그간 사용하였던 종이 수입증지가 폐지되고 전자 이미지화한 형태의 수입증지가 도입됨에 따라 종이 수입증지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현실에 맞게 수입증지를 정의하며 그에 따른 납부방법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를 신설하여 수입증지와 수입증지요금계기에 대한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수수료 납부 방법을 수입증지에서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음.

안 제5조와 안 제6조, 안 제7조는 수입증지의 규격, 계기 관리, 수입금의 납입에 관한 사항으로,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내용을 조례에 편입하였으며, 증명발급기 출력 서식에 맞게 별지 제2호 서식을 수정하고,

종이 수입증지 폐지에 따라 수입증지 발행, 판매 및 교환 관련 규정인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를 삭제함.

기타 한글맞춤법에 맞게 띄어쓰기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상 용어를 정비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7조(수수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 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 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달리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 ·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 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 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② ~ ③ 생략

■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조례

제3조(수입증지요금계기 등에 의한 납부) ①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납 부하는 다음 각호의 수수료 등은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 신용카 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8.1>

1. ~ 5. 생략

■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6조, 제137조 및 제1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1.10.20, 2008.02.14, 2010.10.14)

제2조(적용)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0.10.14>

제4조의1(납부방법) 수수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